

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정 2007. 3. 1
개정 2011.11. 1
개정 2014.11. 1
개정 2019. 1. 1
개정 2020. 3. 1
개정 2021.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구성원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리 관련 업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학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여 자유롭게 인격적인 교육과 근로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 2019.1.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한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과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4.11.1.)(개정 2019.1.1)

③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개정 2014.11.1., 2019.1.1)

④ 2차 가해라 함은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련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4.11.1.)(개정 2019.1.1)

⑤ (삭제)(삭제 2019.1.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법인 정관과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에는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2차 가해 포함)로서 관련된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개정 2019.1.1)

제2장 양성평등상담실

(개정 2019.1.1)

제4조(양성평등상담실 설치) 총장은 성희롱, 성폭력의 예방과 관련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11.1., 2019.1.1)

제5조(구성) ① 상담실에는 상담실장과 상담요원을 둔다. (개정 2019.1.1)

② 상담실장과 상담요원은 대학 구성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상담요원은 대전, 성남, 의정부 캠퍼스별 남녀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4.11.1.)(개정 2021.3.1.)

제6조(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성폭력의 피해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개정 2014.11.1., 2019.1.1)
2. 성희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를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보호시설로 인도 (개정 2014.11.1., 2019.1.1)
3. 고충심의위원회에 피해자의 상담결과 보고와 피신고자에 대한 심의 요구 (개정 2014.11.1., 2019.1.1)
4.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4.11.1.)
5. 그 밖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과 피해에 대한 조사와 연구 (개정 2014.11.1., 2019.1.1)

제3장 사건의 조사와 처리

(신설 2019.1.1.)

제7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

제8조(신고) 성희롱·성폭력의 신고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다. (개정 2019.1.1)

제9조(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의 의무)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개정 2014.11.1., 2019.1.1)

③ 이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나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1., 2019.1.1)

④ 이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1., 2019.1.1)

제10조(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1.)

②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19.1.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9.1.1.)

④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9.1.1.)

제11조(조사결과와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양성평등상담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

② 양성평등상담실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1.)

제4장 고충심의위원회 (개정 2014.11.1., 2019.1.1)

제12조(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 2019.1.1)

② 위원장은 총장이 정하고, 상담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2/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2명 이상의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 2019.1.1)

③ 간사는 상담실의 상담요원이 하며, 회무를 담당한다.

④ (삭제) (삭제 2019.1.1)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성희롱·성폭력의 사건 심의와 중재에 관한 일 (개정 2019.1.1)

2. 가해자의 징계회부에 관한 일 (개정 2014.11.1., 2019.1.1)

3. 사건처리결과 통보에 관한 일 (개정 2019.1.1)

4. 사건전말의 공시에 관한 일 (개정 2019.1.1)

5.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 (개정 2019.1.1)

6. (삭제) (삭제 2019.1.1)

제1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상담실에서 성희롱·성폭력의 사건처리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와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11.1., 2019.1.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1.1.)

제5장 징계 및 조치

(신설 2019.1.1.)

제15조(교직원의 징계) ① 교원으로서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립 학교법과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9.1.1)

② 직원으로서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본교 일반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9.1.1)

제16조(학생의 징계) 학생으로서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학칙 제 5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9.1.1)

제17조(징계결과 통보) 해당 징계위원회는 징계절차에 의거 징계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사건당사자와 양성평등상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9.1.1.)

제18조(조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피신고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신설 2019.1.1.)

1.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설 2019.1.1.)
2. 사회봉사명령 (신설 2019.1.1.)
3.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분리조치와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 (신설 2019.1.1.)
4.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명령 (신설 2019.1.1.)
5. 기타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 (신설 2019.1.1.)

제6장 사건의 예방 (신설 2019.1.1.)

제19조(예방교육) ① 총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

②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1.)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신설 2019.1.1.)
2. 성희롱·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신설 2019.1.1.)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신설 2019.1.1.)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신설 2019.1.1.)
5. 기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신설 2019.1.1.)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거나 당해 년도에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개정 2020.3.1.)

④ 총장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1.)

⑤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본교 양성평등상담실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

⑥ 총장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

⑦ 본 대학교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 교원 및 직원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제별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해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

⑧ 본 대학교의 학칙 적용을 받는 학생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제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

⑨ ⑧항의 적용을 받는 학생은 휴학 후 복학할 때 복학신청과 함께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거나 당해 년도에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

제20조(관련부서의 협력의무) 교육 대상에 따라 교무처, 사무처, 학생관할 행정부서 등은 센터와 협력하여 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하며, 대학 내 관련부서는 상담실의 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1.1.)

제21조(보칙) 총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